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가단5091998(본소), 2022가단5121790(반소)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피고(반소원고)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

**변론 종결**2023. 3. 28.

**판결 선고**2023. 5. 9.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가. 법무법인(유한) I과 J 사이에 2020. 2. 25. 별지1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한국과학기술원이 2022.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금제3751호로 공탁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반소원고)에게 양도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있어서 한국과학기술원이 2022.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금제3751호로 공탁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관련 당사자의 지위, 관계 등

(1) 법무법인 I(이하 '구 법무법인 I'이라 한다)은 2017. 3. 27. 주사무소를 서울 서초구 K빌딩 L호[2018. 3. 8. 서울 서초구 M빌딩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변경]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피고 및 G 변호사 2인이었는데, 2018. 5. 31.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설립인가를 받고 2018. 6. 7. 법무법인(유한) I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같은 날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2) 법무법인(유한) I(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구 법무법인 I이 2018. 5. 31. 조직변경 인가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주사무소로 이어 받아 2018. 6. 7.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로는 C, N, G 변호사 3인이 선임되었고 이 중 C 변호사(이하 관련 당사자들의 '변호사'라는 직함은 모두 생략한다)가 운영대표 선임되어 C에 의하여 운영이 이루어지다가, 2020. 7. 10. 구성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같은 날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3) 법률사무소 B은 C이 이 사건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J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2020. 2. 개설·등록한 사실상 C의 개인 변호사사무실로서, 2020. 7.경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4) 구 법무법인 I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새로운 법무법인 I(이하 '신 법무법인 I'이라 한다)은 C의 주도로 2020. 7. 20. 설립인가를 받아 2020.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등기가

된 법인으로서, 사실상 C 1인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2021. 6. 30. 구성원회의 해산결의로 2021. 8. 19. 해산등기가 이루어졌다.

(5) 법무법인 B은 C의 주도로 2021. 8. 3. 설립인가를 받아 2021. 8. 19. 주사무소를 이 사건 부동산(이후 2021. 10. 11. 서울 서초구 O빌딩 P호로, 2022. 2. 24. 서울 서초구 M빌딩 4층으로 각 변경됨)으로 하여 설립등기가 된 법인이다.

(6) 원고는 C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B, 신 법무법인 I, 법무법인 B에서 각 근무한 직원이고, J는 C에 의하여 고용되어 2018. 11.부터 2021. 1. 31.까지 이 사건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B, 신 법무법인 I에서 근무하였던 소속 변호사이다.

(7) 피고는 구 법무법인 I에서는 2인의 대표자 중 1인이었으나, 이 사건 법무법인에는 고문 및 구성원(출자지분 20%)으로만 참여하였다가 2020. 3. 13.부터 구성원에서도 탈퇴한 변호사다.

(8)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 **나. 법무법인 공동운영 약정 및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체결**

(1) 구 법무법인 I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고 및 G은 2017. 12.경 개인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던 C와 서로 힘을 합쳐 구 법무법인 I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법인을 확대 설립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사무실 물색 및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준비작업 등을 시작하였다.

(2) 피고와 G, C은 이 사건 법무법인의 설립준비를 하면서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총 출자금액은 5억 원(총 출좌좌수 50,000좌)으로 하고, 대표이사로는 2018. 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퇴직한 N을 영입하여 C, G, N 3인으로 하며, 운영대표이사는 C이 맡기로 합의하였다.

(3) 구 법무법인 I은 새로 설립되는 이 사건 법무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 12. 15. 한국과학기술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수도 등 공과금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하되 5년 보장의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4) 2018. 2. 하순경 이 사건 법무법인에 대한 조직변경 인가 및 설립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무실 인테리어 작업이 마쳐지자, 피고, G, C, N과 각 소속 변호사들은 2018. 2. 말경 모두 입주하여 2018. 3. 1.부터 사실상 이 사건 법무법인의 영업이 개시되었고, 운영대표인 C은 자신의 개인사무실 운영시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직원 Q로 하여금 새로 설립되는 이 사건 법무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5) 2018. 6. 7. 이 사건 법무법인의 설립등기가 마쳐진 이후 일자불상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는 구 법무법인 I에서 이 사건 법무법인으로 승계되었다(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법무법인의 자본금의 총액은 500,000,000원이고, 설립 당시 각 구성원별 출자금액과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E  | 10,000 | 100,000,000 | 고문                |
| C  | 10,000 | 100,000,000 | 이사 겸 대표이사         |
| N  | 10,000 | 100,000,000 | 이사 겸 대표이사         |
| G  | 10,000 | 100,000,000 | 이사 겸 대표이사         |
| R  | 4,000  | 40,000,000  | 감사                |
| S  | 3,000  | 30,000,000  | 이사                |
| T  | 3,000  | 30,000,000  | 이사(2018. 10.경 탈퇴) |
| 합계 | 50,000 | 500,000,000 |                   |

## 다. C과 피고 및 G 사이의 분쟁의 발생

(1) 2018. 5.경 이 사건 법무법인의 2018년 4월분 수입·지출 정산내역과 관련하여서부터 C과 피고 및 G은 이견을 보이면서 서로 갈등이 시작되었다.

(2) 그런데 C은 2019. 1. 21.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성원인 피고 및 G이 구 법무법인 I이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음에도 회계상 이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구성원들을 속이고,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납입한 것처럼 하여 잠식 또는 미납입된 자본금 부분에 대하여도 새 법인의 지분을 배정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 22.부터 2019. 2. 10.까지 피고와 G에 대한 구성원 및 대표이사, 이사, 고문으로서의 모든 자격 및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하였다. 이후 C은 위 징계안을 심의의결한다는 명목으로 2019. 1. 22. 11:00경 이 사건 법무법인의 구성원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와 G을 제외한 구성원 4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회부한 징계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3) C은 2019. 1. 22. 18:00경 다시 구성원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와 G을 제외한 구성원 4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

(4) C은 2019. 1. 23. 10:00경 다시 구성원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와 G을 제외한 구성원 6인 전원(2019. 1. 22.자 구성원회의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원으로 가입한 U, V 포함)의 출석과 찬성으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결의를 한 다음(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 이 사건 제1, 2결의에 따른 정관변경 사항에 대한 인가를 법무부장관에 신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9. 3. 12. 이를 인가하였다.

(5) C은 2019. 3. 23. 10:30경 다시 구성원회의를 개최하여,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2결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6)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결의를 하자 G은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470호), 위 가처분 사건의 1심법원은 2019. 5. 7. G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가처분결정의 본안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661호) 1심법원도 2019. 11. 20.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이후 G은 2019. 7. 29. '이 사건 법무법인의 운영대표인 C은 마땅히 공적 운영자금의 지출 내역 및 경비의 지출 내역을 구성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피고를 비롯한 다른 구성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결의를 통한 회계보고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무법인의 자본금 계좌에서 자본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또 구성원 개인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임의적으로 인출해 가는 등 법인 운영대표로서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C의 대표이사 및 운영대표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02호), 피고 및 G은 위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는 한편 C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자 2019. 12. 28.경부터 근무 장소를 이 사건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였다.

(8) 위 가처분 사건의 1심법원은 2019. 10. 5. 위 가처분 사건을 수소법원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피고 및 이 사건 법무법인을 조정절차에 참가시키고, 2019. 10. 24. 피고와 G 및 C으로부터 "이 사건 법무법인에 대하여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 감정을 실시하고 그 회계감사 감정결과에 기초한 재판부의 조정에 대하여 쌍방은 이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합의사항(을 제4-3호증)을 제출받은 다음, 2020. 2. 3. 감정인의 감정보고서가 제출되자 양측 모두에게 각자의 조정안 및 상대방 조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2020. 2. 11. 감정인까지 참석한 조정기일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20. 2. 11.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한 다음, 양측의 추가 조정의견서(피고 및 G은 2020. 2. 19.까지 2회 추가 제출, 이 사건 법무법인은 2020. 2. 19.까지 3회 추가 제출) 및 감정인이 양측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가로 제출한 감정보고서 수정안과 의견서 등을 기초로 하여 2020. 2. 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 및 2020. 3. 2.자 경정결정을 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강제조정결정의 조정조항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및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9) 이 사건 법무법인의 운영대표인 C은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2020. 3. 13. 14:00 피고와 G의 법인탈퇴를 위한 구성원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및 G의 탈퇴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에서 정한 탈퇴에 관한 의안을 결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운영대표 C은 '곧바로 구성원회의록 및 구성원탈퇴에 의한 정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다가, 피고 및 G이 수차례 그 이행을 촉구한 결과 10일 후인 2020. 3. 23.에야 정관변경신청서를 보내왔고, 피고와 G이 곧바로 서류를 완성하여 보내주었음에도 운영대표 C은 2020. 3. 31.에야 정관변경신청서를 W단체에 접수하였고, 2020. 4. 16. 법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가 이루어졌다.

## **라.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피고의 피보전채권**

(1)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 따른 정산금 반환의무 피고와 G은 운영대표 C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고 확정된 정관변경의 인가에 따라 법인등기변경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C은 특별한 이유 없이 법인등기변경등기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의 경우에는 단순한 구성원으로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을 실행하는 데에는 법인등기변경 신청절차에는 더 이상 제출할 서류도 협력할 의무도 없는 상태였고, G의 경우에는 그 후 이 사건 법무법인이 G의 대표이사의 탈퇴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법인해산의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 등의 탈퇴로 인한 변경등기가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무법인이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변제기는 피고 및 G이 2020. 3. 23. 정관변경신청서에 날인을 마치고 운영대표인 C에게 정관변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미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무법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서 확정된 정산출자금 87,000,000원 및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에 따른 정산금 반환의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의 정산을 목적으로 피고 및 피고에게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2019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의 확정에 필요한 절차를 위해 근로소득자로서 자진하여 세무관서에 연말정산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르면 해당 2019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의 총액은 금 63,046,705원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무법인의 운영대표인 C은 이 사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국세청에 2019년 소득세 및 4대 보험금의 확정금을 신고하면서 피고의 인정상여로 75,201,124원을 추가하여 99,649,493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은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2019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수정·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4대 보험료도 감액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에서 공제할 금액을 다시 산정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    |            |            |                                                                                    |            |    |
|----|------------|------------|------------------------------------------------------------------------------------|------------|----|
| 피고 | 44,446,239 | 4,444,623  | 20,876,910(1) 건강보험료는 20,666,310원으로 감액되었고(을 제7-2호증), 국민연금보험료는 210,600원이다(을 제7-3호증). | 69,767,772 | 을7 |
| X  | 2,365,026  | 236,502    | 3,976,520                                                                          | 6,578,048  | 을8 |
| Y  | 334,631    | 33,463     | 2,676,190                                                                          | 3,044,284  | 을9 |
| 총계 |            | 79,390,104 |                                                                                    |            |    |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법무법인이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계산하면, 25,682,481원(= 기준액 105,072,585원 - 확정액 79,390,10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시기인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이다.

(3) 이 사건 조정조항 제5항에 따른 정산금 반환의무 이 사건 조정조항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2018년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17,234,933원, 2019년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7,570,938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래는 위 손해배상준비금은 그 보유기간이 5년이므로 2018년분에 대하여는 2024. 1. 1., 2019년분에 대하여는 2025. 1. 1.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무법인은 2020. 7. 10. 구성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같은 날 해산등기가 마쳐지고, 구성원 중 S이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법무법인은 위 보유기간 경과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일단 정산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그 정산 이후 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고에게 손해배상사유가 발생한다면2)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조항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법무법인이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계산하면, 합계 24,805,871원(= 2018년분 17,234,933원 + 2019년분 7,570,938원)이 된다(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4)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보전채권액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20. 2. 25. 기준으로는 137,488,352원, 변론종결일 기준으로는 177,918,420원에 이른다.

|          |                                          |              |                                                 |
|----------|------------------------------------------|--------------|-------------------------------------------------|
| 조정조항 제2항 | 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4.부터 연 12% | 87,000,000원  | 87,000,000원 + 31,463,013원(1100일) = 118,463,013원 |
| 조정조항 제3항 | 25,682,481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부터 연 12%  | 25,682,481원  | 25,682,481원 + 8,967,055원(1062일) = 34,649,536원   |
| 조정조항 제5항 | 24,805,871원                              | 24,805,871원  | 24,805,871원                                     |
| 합계       | 137,488,352원                             | 177,918,420원 |                                                 |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법무법인은 2020. 1. 30. 이 사건 부동산(전용면적 238.676㎡)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0㎡를 법률사무소 B 대표로 등록한 J에게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전대차기간 2020. 2. 1.부터 2020. 12. 1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2. 25. 이 사건 법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J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20. 2. 26. 그 채권양도통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도달되었다.

(2) J가 이 사건 법무법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내역이라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내역서(갑 제8호증의 1, 2, 3)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에 대한 송금일시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4. 10.부터 2020. 5. 8.까지 사이에 걸쳐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법무법인은 전차인으로 되어 있는 J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J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 된다.

① 2020. 4. 10. 70,000,000원 송금의뢰인 J(갑 제8호증의 1)

② 2020. 4. 29. 40,000,000원 송금의뢰인 J(갑 제8호증의 2)

③ 2020. 5. 8. 40,000,000원 송금의뢰인 J(갑 제8호증의 3)

(3) 이후 J와 원고는 2021. 1. 14.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첨부서류로 하여 'J가 한국과학기술원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1. 18.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서를 작성한 다음, 2021. 3. 22. 원고가 채권양도인 J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21. 3. 23. 그 채권양도통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도달되었다.

(4) J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사유서와 함께 제출한 진술서(을 제14호증)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B의 개설·등록은 이 사건 법무법인의 운영대표인 C의 요청에 의해 3개월 정도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여 C 대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자신은 실제로 이 사건 법무법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2020. 2. 25.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작성된 사실도 몰랐다. 약속한 명의대여기간 3개월이 지나도 법률사무소 B의 폐업처리가 되지 않아 2020. 7.경 정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C 대표가 2020. 7.경 법률사무소 B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법률사무소 B 폐업신고 후에는 C이 설립한 신 법무법인 I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2021. 1. 31.자로 법무법인에서 퇴사하겠다고 알리자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정리하는 서류를 작성하자는 C 대표의 요청으로 작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바. 피고의 채권압류추심명령 및 한국과학기술원의 임대차보증금 공탁**

(1) 피고는 2020. 2. 28.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자,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청구채권액이 청산출자금 등 153,831,751원(지연손해금 별도)이라고 주장하며 위 153,831,75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2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5282로 채무자 이 사건 법무법인, 제3채무자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20. 9. 18. 인용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20. 9. 23. 한국과학기술원에 송달되었다.

(2) 이후 피고는 2021.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14426으로 청구금액을 99,511,791원(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의 청구금액 원금 87,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656,065원,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의 가항 청구금액 원금 11,794,493원과 그에 대한 이자 27,033원)으로 하여 원금 합계 98,794,493원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자 합계 717,298원에 대하여는 바로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21. 6. 2. 인용되었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전부명령은 2021. 6. 7. 한국과학기술원에 송달되었다.

(3) 그러자 한국과학기술원은 2022.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금제3751호로 채권자들의 우선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Q의 증언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 2. 양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본소청구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채권압류전부명령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2020. 2. 25. J에게 양도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다두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 나. 피고의 반소청구

이 사건 법무법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J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J 및 전득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되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음에 귀착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제기일(2022. 5. 3.)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인 2020. 9. 28.경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던 사실을 고지받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반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반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과학기술원은 2020. 9. 23.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고 2020. 9. 28.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무법인이 J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20. 2. 25.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02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2019. 10. 5. 조정절차에 회부하고 피고와 G의 구성원 탈퇴를 전제로 정산을 위한 감정절차까지 마친 후 서로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조정안에 대한 의견까지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기초가 된 내용에 대하여 쌍방간에 활발히 의견이 오고 가던 시점인 사실, ②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20. 2. 28.에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에 기초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조정조항에 의하여 피고가 정산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법무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법무법인의 운영대표인 C은 2020. 1.경부터 이미 이 사건 법무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무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있었던 2020. 2. 25. 무렵 이 사건 법무법인의 가용 금융자산은 26,788,027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위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무법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J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처분하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채무자인 이 사건 법무법인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J 및 전득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이 사건 법무법인의 운영대표인 C은 2019. 1.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법무법인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피고 및 G의 의결권을 상법이나 정관의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그들의 출자지분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성원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대립 및 갈등 관계를 심화시켜 왔다.

② C은 2020. 1.경부터 이미 이 사건 법무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무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법률사무소 B을 개설·등록하여 수임사건을 법률사무소 B로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법무법인의 수입을 줄이고 있었고, 이 사건 법무법인 운영자금 및 경비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달라는 피고 및 G의 계속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법무법인은 법률사무소 B의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전차인인 J에게 부담하는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J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J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법무법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으로서,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오히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인 J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C에게 퇴사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이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시기와 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법무법인의 폐업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법무법인을 형해화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허위거래 또는 가장양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02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조정안을 두고 쌍방간에 활발히 의견이 오고 간 상태에서 강제조정결정이 나오기 불과 3일전으로서, 강제조정안의 골격이 어느 정도는 예측되던 시점이었다.

⑥ 원고는 C에 의하여 직원으로 채용되어 C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직원이다.

#### **다. 사해행위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인 G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의 전득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4.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전득자인 원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김상근

별지

1) 건강보험료는 20,666,310원으로 감액되었고(을 제7-2호증), 국민연금보험료는 210,600원이다(을 제7-3호증).

2) 다만, 이 사건 조정조항 제2, 3항에 따른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리금액만 합하여도 153,112,549원(118,463,013원 + 34,649,563원)에 이르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공탁금보다 많으므로, 설령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피고의 손해배상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인다.